

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)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: 2008. 2. 19(사천시장)

나. 회 부 : 2008. 2. 19(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5호)

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도시과장 : 강상민)

가. 제안사유

-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에 (주)대동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두원이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토지이용과 공동주택(아파트)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코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위 치 :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
- 면 적 : 103,147㎡ (980세대, 계획인구 : 3,136명)
-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요내용
 - 용도지역 변경 : 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
 - 용도지구의 지정 : 주거개발진흥지구
 -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: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

다.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조영옥)

- 본 안건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에 (주)대동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두원이 공동주택(아파트) 건설을 위하여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등)을 입안코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
- 주요내용 검토결과
 - 본 안건은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의 미개발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것으로
 - 이와 관련한 개별 법령에 의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
 - 협의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도용지사용,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사업 추진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임
 - 본 안건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98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시 3,136여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(강상민)
이문상	○ 공동 주택 관련한 민원사항?	○ 제안서 제출 이전에 건축회사간 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되었음
최인환 제갑생	○ 수도용지는 포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○ 하수처리는 용현하수처리 시설에서 가능한 지?	○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 후 시행토록 지도 ○ 용현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함
최갑현	○ 본 사업 시행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	○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동의함

6. 심사결과 : 찬성의견 제시

7. 소수의견 : 없음